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검토보고서

2018. 10. 25 (목)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
- 제안일 : 2018. 10. 15.
- 회부일 : 2018. 10. 19. (의안번호 :18 - 89)

2. 제정이유

전국적으로 주택화재 사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주택 소유자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에 따른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안 제1조 ~ 제3조)
 - 화재안전취약가구를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로 정의
-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등(안 제4조 ~ 제7조)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원 범위 명시
- 소방시설설치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제10조)
 - 위원회 설치 근거 및 심의 기능에 관한 사항
 - 위원의 구성 및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 회의 개의 및 의결기준 정립, 위원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4.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주택화재 사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주택 소유자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에 따른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가. 안 제1조 ~ 제3조는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등
 - 화재안전취약가구를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로 정의
 - 나. 안 제4조 ~ 제6조는 지원대사의 범위 등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원 범위 명시
 - 다. 안 제8조 ~ 제10조는 소방시설설치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설치 근거 및 심의 기능에 관한 사항
 - 위원의 구성 및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 회의 개의 및 의결기준 정립, 위원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법률에 명시된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기초소방시설인 만큼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설치 지원 확대가 시급한 사항이므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원대상자가 위급상황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 점검 및 사용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여할 것으로 사료됨.